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·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,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510호, 2023. 6. 20. 공포, 2024. 6. 2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(안 제91조의2 신설)

평가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,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요건 충족여부, 공정거래 자

율준수제도 운영 상황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자에 통지하
되, 등급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
도록 함.

나.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기준 마련(안 제91조의3 신설)

평가결과에 따른 등급,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
제도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
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,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
하도록 하고, 포상·지원 등의 기준 및 정도,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등
혜택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
수 있게 함.

다.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(안 제91조의4 신설)

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신청 기업이 평가비용을 부담하되, 「중
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
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, 평가비
용, 감면대상, 감면금액 등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
시할 수 있게 함.

라.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(안 제91조의5 신설)

평가기관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·평가 업무를 2

년 이상 수행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,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하며, 평가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1. ~ 4. 10.) 예정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1조의2(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) ①법 제12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요건을 갖추어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, 실적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요건 충족 여부,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, 등급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

알려야 한다.

제9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1조의3(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 제4항에 따라 평가등급,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효과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,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의 기준·정도, 적용제외 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1조의4(평가비용) ① 법 제120조의2 제5항에 따른 평가비용은 평가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비용,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1조의5(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자율준수평가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한국공정거래조정원

2. 공정거래 관련 인증·평가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설></u>	제91조의2(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) ①법 제12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요건을 갖추어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. ② 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, 실적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요건 충족 여부,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, 등

현행	개정안
<신설> <신설>	급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. 제91조의3(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 제4항에 따라 평가등급,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효과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,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의 기준·정도, 적용제외 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제91조의4(평가비용) ① 법 제120조의2 제5항에 따른 평가비용은 평가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비용,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91조의5(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자율준수평가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1.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. 공정거래 관련 인증·평가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306